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인 경우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14호, 2021.6.8. 공포, 2022.1.1. 시행)됨에 따라,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(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)가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동법 제37조에 따른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

3. 주요내용

가. 복지서비스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를 규정(시행령 제10조의2 신설)

- 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
- 2) 미성년자인 경우
- 3)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

인정되는 경우

- 나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(시행령 제17조제1항제11호, 14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복지서비스의 신청) 법 제18조 제3항에서 “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
2. 미성년자인 경우
3.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
14.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10조의2(복지서비스의 신청) 법		
		제18조 제3항에서 “심신미약 또		
		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		
		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		
	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	
		우를 말한다.		
		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		
		견인인 경우		
		2. 미성년자인 경우		
		3.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		
		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		
		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		
제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	제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			
의 처리) ① 국가(법 제41조제2	의 처리) ① -----			
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및 제5	-----			
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	-----			
한다)와 지방자치단체(해당 권	-----			
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	-----			
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	-----			
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	-----			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-----			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	-----			
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	-----			
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	-----			

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1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 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
11.·12. (생략)	12.·13. (현행 제11호 및 제12 호와 같음)
<신설>	14.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 제 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	
연락처	(044) 202 - 3352